



IFRS4 2단계 도입 관련 주요 이슈

최 원 선임연구원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보험계약과 관련한 국제회계기준인 IFRS4 2단계(Phase II) 최종안을 2015년 초에 발표할 계획임.

- IFRS4 1단계(Phase)는 각 국가별 기존 보험부채 평가방법을 인정하고 이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우리나라는 2011년에 도입하였음.
- IFRS4 1단계 시행 이후 모든 금융상품에 대한 시가평가라는 IFRS 원칙에 부합하기 위하여 보험 부채의 공정가치 평가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짐.
- 보험부채의 공정가치 평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IFRS4 2단계 공개초안(exposure draft)은 2010년 7월 발표되었고, 2013년 6월에는 수정된 공개초안이 제시되었으며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015년 초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임.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제시한 수정된 IFRS4 2단계 공개초안에는 현재까지 진행된 보험부채의 공정가치 평가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보험부채의 공정가치를 최선추정부채¹⁾(best estimate liability), 위험조정²⁾(risk adjustment), 계약서비스마진³⁾(contractual service margin)으로 구분하여 측정하도록 하고 있음.
- 1년 만기 단기 보험계약의 경우 현재가치 측정에 따른 실익이 크기 않아 신계약비⁴⁾를 이연 처리하는 방식을 인정하고 있음.
- 재보험 계약의 경우 최선추정부채와 위험조정을 통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평가 시 출재보험 수수료, 원수사로부터 이전된 위험을 표시할 수 있는 위험조정 등이 고려될 수 있음.

1) 보험계약에서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 현금유출을 시장금리(무위험수익률+유동성프리미엄)로 할인하여 산출함.
 2) 미래 현금흐름이 불리하게 변동될 위험을 측정하여 보험부채로 적립함.
 3) 보험계약으로부터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의 현재가치로서 보험기간 동안 상각하여 이익으로 인식함.
 4) 보험설계사 비례수당 등 특정 보험계약 포트폴리오에 직접 귀속시킬 수 있는 비용이며 나머지는 간접 신계약비로 구분함.

■ 미국의 보험 전문 신용평가 기관인 A. M. Best는 2014년 7월⁵⁾ IFRS4 2단계가 시행될 경우 보험산업의 재무상황과 손익구조 등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향후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요 이슈를 제시함.

- 첫째, 유배당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일부 미래 지급금에 대한 예측 변동이 계약서비스마진에 반영되지 않아 손익계산서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논의를 진행 중에 있음.
- 둘째, 계약서비스마진의 인식 범위를 확대시킬 경우 재무보고의 신뢰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이는 실무 적용에서 충분히 해소가 가능하며, 보다 광범위한 계약서비스마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 셋째,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는 2014년 초 IFRS4 2단계 논의를 철회하고 미국 보험회사들에게 적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이로 인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 적용이라는 IFRS4 제도의 취지가 약화될 수 있음.

■ 한편, A. M. Best는 보고서에서 IFRS4 2단계 도입이 보험회사 신용평가의 중요한 변화 요인⁶⁾이며,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보험회사 신용평가 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을 언급함.

- 첫째, 보험회사 신용평가 시 IFRS4 2단계 도입에 따른 위험조정과 계약서비스마진이 자본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가를 고려해야 함.
- 둘째, 위험조정과 계약서비스마진에 따른 변화를 재무건전성 평가 항목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셋째, 기존의 평가방식과 IFRS4 2단계 도입 이후 평가방식의 비교 가능성을 확대해야 할 것임.
- 넷째, IFRS4 2단계에서 제시될 할인율에 대한 민감도를 신용평가에 적용하는 방안도 요구됨.

■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금감원이 IFRS4 2단계 도입을 위한 준비단을 구성하여 책임준비금제도 등 보험감독제도 정비와 보험회사의 계리 및 회계인프라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⁷⁾

- 보험계리, 감독제도, 실무적용으로 구분하여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 적용방안과 재무적 영향을 검토함과 동시에 관련 법 개정과 보험회사 인프라 구축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음.

(A.M. Best, 금감원)

5) A.M. Best(2014, 7), "New IFRS Standard to Significantly Change Insurers' Public Financial Reporting".

6) A.M. Best는 동일한 조건에서는 제도 도입이 보험회사 신용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함.

7) 금감원(2013, 9, 25),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 2단계(IFRS4 Phase II) 도입준비단」 구성".